

영주시의회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의 안 번 호	257
--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6. 4. 10.
발의 의원 : 박유서의원외 6명

1. 제안이유

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“5분 자유발언제”를 도입하여 의원의 발언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시정의 각종 현안사항 및 관심 사항에 대하여 5분이내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도록 하여 생동감 있는 의회 운영을 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“5분 자유발언제” 신설(안 제28조의2)

- 본회의 개의 시 안건 상정 전 30분 범위내에서 의원 1인에 대하여 5분 이내에 자유발언 기회를 부여,
- 발언신청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하며, 발언은 신청순서에 의함.

○ 위원회 조례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 개정(안 제59조)

3. 자치법규안 : 불임

4. 신구대비표 : 불임

5. 참고사항

○ 관련법령(발췌) 1부

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영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영주시의회 회의규칙”을 “영주시의회 회의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및 제14조제2항 중 “지방자치법”을 “「지방자치법」”으로 한다.

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“5분 자유발언”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 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

③ 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, 별도의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한다.

제59조제3항 중 “간사가”를 “위원이”로 한다.

제79조제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대비 표

【영주시의회 회의규칙】

현 행	개 경 안	개정이유
<u>영주시의회 회의규칙</u>	<u>영주시의회 회의규칙</u>	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<u>지방자치법</u> 제63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의회(이하 "의회"라 한다)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	
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생략) ②의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<u>지방자치법</u>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5조 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. <신설>	제14조(회의에 관한 선포) ①(현행과 같음) ② 「 <u>지방자치법</u> 」	
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(생략) ②(생략) ③위원회의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·날인한다.	제2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의장은 본회의 개의 시에 30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원에게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②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 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 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 ③5분 자유발언은 제1항에 정한 제반 사안에 대하여 발언자의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 한정하고, 별도의 소견을 물거나 답변을 요구할 수 없으며 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	의원의 발언기회 확대로 시정 및 관심사안에 대하여 자유로운 의사표명으로 생동감 있는 의회 운영
	제59조(위원회 회의록) ①(현행과 같음) ②(현행과 같음) ③ 위원이	위원회 조례의 직무대리 규정 보완에 따라 정비

관 련 법령(발췌)

【 국회법 】

제105조 (5분 자유발언<개정 1997.1.13>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의장은 당일 본회의에서 심의할 의안이 다수 있는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개의중에 이를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4시간전까지 그 발언취지를 간략히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.

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교섭단체별 소속의원수의 비율을 고려하여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.

【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】

제38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국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, 그 밖에 중요 관심사안에 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"5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 다만, 도정질문을 위한 본회의 개의일은 제외한다.<신설 '99. 4. 8>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1시간전까지 발언취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, 발언자 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되 발언 회수가 적은 의원을 우선한다.

③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고 별도 의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으며, 발언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.<신설 '99. 4. 8>

【 안동시의회 회의 규칙 】

제32조의 2 (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,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 및 시정전반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수 있도록 3분 이내의 발언(이하 "3분 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3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에 의한다. 다만,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기타사유로 발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 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<신설 1997.6.17>

【 김천시의회 회의 규칙 】

제32조의2(5분 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 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이내의 발언(이하 5분 자유발언 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전일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 다만 발언을 신청한 의원이 기타 사유로 발언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하고자 할 때는 발언 실시 전까지 의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.

<본조신설 2003.06.26>

【 포항시의회 회의 규칙 】

제33조의2(5분자유발언) 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그 개의시로부터 30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(이하 "5분자유발언"이라 한다)을 허가할 수 있다.

②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일 2시간전까지 그 발언요지를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발언순서는 신청순서와 같다. <본조신설 '96. 2. 15, 개정 '99.1.29, 2000.6.24>

* 경상북도니 "자유발언제" 시행 : 포항시, 구미시, 안동시, 고천시, 경주시